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8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0.

발 의 자:정혜경·전종덕·박수현

이수진 • 허성무 • 윤종오

한창민 • 이용우 • 이재강
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 은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 도록 하고 있음.

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어,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, 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. 그 근거로 연도별 장애인 미고용률은 최근 5년간 50% 이상을 웃돌고 있음 (23년 기준).

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인 상황이므로 기업이

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실정임. 이와 같은 상황에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,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가산률을 높여 장애인 고용 촉진을 꾀하려 함(안 제3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"을 "최저임금액"으로, "2분의 1 이내의"를 "2분의 1 이상의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최저임금액으로"를 "최저임금액의 2배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	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
① · 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	③
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	
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	
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	
의를 거쳐 「최저임금법」에	
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<u>최저임</u>	최저임금
<u>금액의 100분의 60</u> 이상의 범	<u> </u>
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	
여 고시하되, 장애인 고용률(매	
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	
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	
장애인 총수의 비율)에 따라	<u>2</u>
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	분의 1 이상의
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. 다	
만,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	
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	
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	
부담기초액은 「최저임금법」	
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	<u>최저임금액의 2배로</u>
저임금액으로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① (생 략)

④ ~ ① (현행과 같음)